

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별표 10]  
수수료(제41조제1항 관련)

1. 수수료 금액

| 납부 대상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납부금액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
| 가.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사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
| 1) 제1차시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만8천원      |
| 2) 제2차시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3만3천원      |
| 나.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4만원        |
| 다.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재발급받으려는 자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만원        |
| 라.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업의 지위승계를 신고하는 자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2만원        |
| 마. 제26조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사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2만원        |
| 바. 제27조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사증을 재발급받으려는 사람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만원        |
| 사. 법 제34조제1항 및 이 규칙 제37조에 따라 점검능력 평가를 받으려는 자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다.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
| 1) 점검능력 평가 신청 수수료: 10만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
| 2) 점검능력 평가 관련 제 증명서 발급 수수료: 2천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
| 3) 점검실적 중 점검인력의 배치기준 적합 여부 확인 수수료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
| 종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적용대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수수료<br>(원) |
| 1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연면적 5,000㎡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하여 작동점검을 실시한 경우  | 2,200      |
| 2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연면적 5,000㎡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하여 작동점검을 실시한 경우  | 2,700      |
| 3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연면적 20,000㎡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하여 종합점검을 실시한 경우 | 4,400      |
| 4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연면적 20,000㎡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하여 종합점검을 실시한 경우 | 4,900      |

2. 납부방법

가. 제1호가목 및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수수료는 계좌입금의 방식 또는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신용카드로 결제해야 한다. 다만,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·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결제할 수 있다.

나. 제1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납부해야 한다.